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이외에도 공인된 법학교육기관(법과대학, 법학과, 법학부)이 존재한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시험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뿐만 아니라 의(치)과대학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직역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2009학년도 로스쿨 신입생 중에 소위 SKY 대학출신이 53.9%를 차지한 것은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기준을 세웠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결과 학력서열화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미 다양한 법적 지식과 경력을 쌓은 사람에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출신이 아니어도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지식과 활용능력을 갖추었으면 예비시험제도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

양 형 우

-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 한국재신법학회 이사
-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본이 2011년부터 예비시험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도입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년간 로스쿨에서의 교육 받은 것과 동등한 정도의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3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이거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로스쿨의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면 사법시험의 법조 진입장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오히려 진입장벽을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이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한다며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과연 합당한 주장일까. 로스쿨 인가대학이 확정되기 이전인 2006년 당시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마련한 변호사자격시험법안에서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은 대학들이 지난 2006년에 예비시험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예비시험제도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로스쿨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검정고시와 독학사제도가 정규 학교교육을

유명무실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시험이 로스쿨 제도의 운영에 크게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특히 현행 사법시험이 2016년까지 유지되므로, 예비시험의 실시시기를 2017년 이후로 하면 앞으로 7·8년이 남게 되어, 그 동안 로스쿨은 충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시험 반대측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장학금 비율도 높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도 길이 열려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들은 과도한 교육비가 투여되는 로스쿨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각 로스쿨들이 교육시설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정원이 적게 배정되어 교육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가 적용되는 사교육 체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사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학금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에게 로스쿨 진학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의 면면을 보면 서울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출신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로스쿨의 출범으로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학부 차원의 법학교육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한국 법학교육체제의 기울어짐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예비시험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로스쿨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며 한국 법학교육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스쿨 졸업자와 법과대학(법학부) 졸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로스쿨 졸업생의 특권층화를 막을 수 있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법학도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